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66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김동아 · 이건태 · 박균택  
임미애 · 정준호 · 문대림  
염태영 · 양부남 · 최혁진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결혼·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다.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제91조의29제1항에 따른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9제1항”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9(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

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제91조의18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로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운용될 것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상장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④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연장, 이자소득등의 합계액, 계약 해지 시 소득세 추징, 소득 요건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 18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신설>

-----  
-----  
1.·2.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9(청년형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  
형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  
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  
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  
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  
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  
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  
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  
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  
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청  
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각 과  
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청년형종합자  
산관리계좌이고 제91조의18제  
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계좌로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운용될 것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  
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상장주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상장주식대체 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④ 청년형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연장, 이자소득등의 합계액, 계약 해지 시 소득세 추징, 소득 요건 확인 등에 관



